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8. .

법제처 심사 전

법무부
기획조정실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(5급 2명, 6급 2명, 7급 1명, 8급 1명)을 증원하고,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(7급 2명)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법무부 소속기관에 대구교도소 신축·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 인력 80명(6급 9명, 7급 9명, 8급 30명, 9급 32명)을 증원하고,

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관리과장의 업무분장사항 중 체류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제21호까지의”를 “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제9호의2 중 “관계법령의 입안”을 “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대체복무요원 복무(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.) 및 교육
제16조제8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대체복무요원 복무(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.)에 관한 사항
제27조 제5항 제8호 중 “체류자격부여”를 “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”로 한다.

제27조 제12항에 제6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제5항 제7호, 제8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
제28조 제2항 중 “출입국관리사무관”을 “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”으로 한다.

별표 4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관할구역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746”을 “75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15”를 “721”로 하며, 교정관 “20”을 “22”로, 교감 “32”를 “34”로, 교위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기록연구사 1 다음에 “교사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5의2 중 총계 “746”을 “75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15”를 “721”로 하며, 교정관 “20”을 “22”로, 교감 “32”를 “34”로, 교위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기록연구사 1 다음에 “교사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5의3 중 총계 “709”를 “71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78”를 “684”로 하며, 교정관 “20”을 “22”로, 교감 “32”를 “34”로, 교위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기록연구사 1 다음에 “교사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5의4 중 총계 “709”를 “71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78”를 “684”로 하며, 교정관 “20”을 “22”로, 교감 “32”를 “34”로, 교위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기록연구사 1 다음에 “교사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7 중 총계 “16,256”을 “16,338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16,250”을 “16,332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16,250”을 “16,332”로 하고, 교감 “1,415”를 “1,424”로 하며, 교위 “1,771”을 “1,782”로 하고, 교사 “5,523”을 “5,553”으로 하며, 교도 “6,000”을 “6,032”로 하며, “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”를 “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교정본부) ① · ② (생략)	제8조(교정본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정정책단장은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제5호까지, 제5호의 2,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-----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	⑥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교정행정 <u>관계법령의 입안</u>	9의2. ----- <u>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9의3. <u>대체복무요원 복무(예비 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.) 및 교육에 관한 사항</u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⑦ ~ ⑬ (생략)	⑦ ~ ⑬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교도소·구치소) ① ~ ⑦ (생략)	제16조(교도소·구치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⑨ ~ ⑳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u>대체복무요원 복무(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.)에 관한 사항</u> 4. (현행과 같음) ⑨ ~ ㉑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출입국·외국인청 등)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, 국적·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. (생략) 8. 외국인의 <u>체류자격부여</u> 및 재입국허가 9. ~ 21. (생략)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6의2. (생략) 6의3. <u><신설></u> 7. (생략)	제27조(출입국·외국인청 등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 (생략) 8. 외국인의 <u>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</u> 및 재입국허가 9. ~ 21. (생략) ⑫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<u>6의3. 제5항 제7호, 제8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</u> 7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출입국·외국인청 및 출입 국·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)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, 소장은 <u>출입국관리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8조(출입국·외국인청 및 출입 국·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) ② ----- ----- <u>서기관 또는</u> <u>출입국관리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
---	--

[별표 4]

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, 외국인보호소, 출입국·외국인
지원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28조 및 제29조 관련)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	인천광역시	인천국제공항 <u>※ 다만,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 의 경우 「출입국관리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 -2) 차목, 별표 1의3 중 제14 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외 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·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대 해서는 전국을 관할한다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법무부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746</u>	<u>752</u>	+6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15</u>	<u>721</u>	+6
·	·	·	
·	·	·	
교정관	<u>20</u>	<u>22</u>	+2
·	·	·	
·	·	·	
교감	<u>32</u>	<u>34</u>	+2
·	·	·	
·	·	·	
교위	<u>19</u>	<u>20</u>	+1
·	·	·	
·	·	·	
기록연구사	1	·	
교사	<u><신설></u>	<u>1</u>	+1
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	16	·	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의2]

법무부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746</u>	<u>752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715</u>	<u>721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정관	<u>20</u>	<u>2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감	<u>32</u>	<u>34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위	<u>19</u>	<u>2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기록연구사	1	•	
교사	<신설>	<u>1</u>	+1
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	16	•	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5의3]

법무부 공무원 정원표(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709</u>	<u>715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678</u>	<u>684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정관	<u>20</u>	<u>2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감	<u>32</u>	<u>34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위	<u>19</u>	<u>2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기록연구사	1		
<u>교사</u>	<u><신설></u>	<u>1</u>	+1
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	16		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5의4]

법무부 공무원 정원표(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709</u>	<u>715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678</u>	<u>684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정관	<u>20</u>	<u>2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감	<u>32</u>	<u>34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교위	<u>19</u>	<u>2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기록연구사	1		
<u>교사</u>	<u><신설></u>	<u>1</u>	+1
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	16		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7]

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6,256</u>	<u>16,338</u>	+82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<u>16,250</u>	<u>16,332</u>	+82
일반직 계	<u>16,250</u>	<u>16,332</u>	+82
·	·	·	
·	·	·	
교감	<u>1,415</u>	<u>1,424</u>	+9
·	·	·	
·	·	·	
공업주사 또는 <u>방송통신주사</u>	7	<u><개정></u>	
·	·	·	
·	·	·	
교위	<u>1,771</u>	<u>1,782</u>	+11
·	·	·	
·	·	·	
교사	<u>5,523</u>	<u>5,553</u>	+30
·	·	·	
·	·	·	
교도	<u>6,000</u>	<u>6,032</u>	+32
·	·	·	
·	·	·	